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1 선고 2021가단34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28.

판 결 선 고 2022. 4.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12.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2. 14. 접수 제79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D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전1009)을 신청하였고, 2015. 9. 9. 'D는 원고에게 14,996,110원 및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9,085,980원에 대하여 연 24%, 941,300원에 대하여 연 2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5. 3. 24.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12. 11.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D와 피고 등은 2018. 12.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청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D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등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등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살피건대,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함으로써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자신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2. 14. 접수 제79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